

(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-참조28)

#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19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6. .

제 출 자 : 성남시 장

개 정 구 분 : 일부개정

개 정(제정) 이 유

- 「지역보건법」 일부개정(2023. 3. 28.)으로 개인정보 파기, 건강검진 등 신고, 동일 명칭 사용금지 등 과태료 부과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·위임 조항을 정비하고 자 함

주 요 내 용

- 가.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(안 별표)
  -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·관리를 위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난 후 파기하지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  -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다. 제4호서식,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 조항 변경(안 별지)

개 정(제정) 조 례 안 : 붙임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상황 : 해당없음

성별영향평가결과 : 불임 (원안동의)

부패영향평가결과 : 불임 (원안동의)

규제심사검토결과 : 불임 (원안동의)

입법예고결과

○ 입법예고 기간: 2023. 5. 30.(화) ~ 6. 9.(금)(10일간)

○ 입법예고 결과(공청회 시 별도 표시): 의견없음

##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4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법 제23조 및 제29조”를 “법 제34조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,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관부서	분당구보건소
입 안 자	보건 행정 과 장	송 기 철
	의약무관리팀장	이 영 숙
	주 무 관 ( 연 락 처 )	김 서 윤 (729-3997)

[ 별표 ]

##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(제2조 관련)

□ 일반기준

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

□ 개별기준

위 반 내 용	근거조항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차	2차	3차이상
1. 「지역보건법」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	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	600	1,200	2,400
2. 「지역보건법」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	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1호	100	150	300
3. 「지역보건법」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또는 건강 생활지원센터 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	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2호	100	150	300

□ 감경기준

위반동기 및 결과에 정상을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.

[ 별지 제4호서식 ]

##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

문서번호	20 . . . . .			
수신				
제목	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			
귀하께서는 「지역보건법」 제 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 「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·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별지 납입 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20 년 월 일 까지 시중 은행에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통지 제 호				
과태료 처분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전화번호	
위반 사항	관련법 조항		위반내용	
	산출근거			
과태료 금액				
※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				
첨부 :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				
년 월 일				
성 남 시 장 (인)				



[ 별지 제9호서식 ]

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

제 호  
 수신 지방법원장 귀하  
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

1.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 관련입니다.
2. 「지역보건법」 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 「성남시 지역 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바, 처분 상대방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의 제기자	성 명 (한 자)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과태료 처분	과태료 처분명		처분근거	
	처분 송달일		이의제기일	
	처 분 사 유	(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)		
이의제기 사유	“			

- 첨부 1. 이의신청서 1부  
 2. 이의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서류 1부.  
 3. 그 밖의 증거서류

년 월 일

성 남 시 장 (인)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제1조(목적)</b>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<u>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 처분기준의 설정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</b> 법 <u>제23조</u> 및 <u>제29조</u>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</p> <p>[별표]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(제2조 관련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별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30%;">위 반 내 용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근거조항</th> <th colspan="3" style="width: 60%;">과태료 금액(만원)</th> </tr> <tr> <th>1차</th> <th>2차</th> <th>3차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1. 「지역보건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·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, 예방접종 및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·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,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</td> <td rowspan="2">지역보건법 제26조</td> <td>100</td> <td>150</td> <td>300</td> </tr> <tr> <td>50</td> <td>100</td> <td>300</td> </tr> <tr> <td>2. 「지역보건법」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,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</td> <td></td> <td>100</td> <td>150</td> <td>3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감경기준 위반동기 및 결과에 정상을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.</p>	위 반 내 용	근거조항	과태료 금액(만원)			1차	2차	3차이상	1. 「지역보건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·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, 예방접종 및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·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,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	지역보건법 제26조	100	150	300	50	100	300	2. 「지역보건법」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,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		100	150	300	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 ----- <u>제34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b>제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</b> 법 <u>제34조</u> ----- -----.</p> <p>[별표]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(제2조 관련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별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30%;">위 반 내 용</th> <th rowspan="2" style="width: 10%;">근거조항</th> <th colspan="3" style="width: 60%;">과태료 금액(만원)</th> </tr> <tr> <th>1차</th> <th>2차</th> <th>3차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「<del>지역보건법</del>」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</td> <td>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</td> <td>600</td> <td>1,200</td> <td>2,400</td> </tr> <tr> <td>2. 「지역보건법」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</td> <td>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1호</td> <td>100</td> <td>150</td> <td>300</td> </tr> <tr> <td>3. 「지역보건법」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</td> <td>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2호</td> <td>100</td> <td>150</td> <td>3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감경기준 위반동기 및 결과에 정상을 참작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.</p>	위 반 내 용	근거조항	과태료 금액(만원)			1차	2차	3차이상	1. 「 <del>지역보건법</del> 」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	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	600	1,200	2,400	2. 「지역보건법」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	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1호	100	150	300	3. 「지역보건법」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	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2호	100	150	300
위 반 내 용			근거조항	과태료 금액(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차	2차		3차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「지역보건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·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, 예방접종 및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·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,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	지역보건법 제26조	100	15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50	10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「지역보건법」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,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		100	15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 반 내 용	근거조항	과태료 금액(만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1차	2차	3차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「 <del>지역보건법</del> 」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	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	600	1,200	2,4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「지역보건법」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	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1호	100	15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 「지역보건법」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	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2호	100	150	3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[별지 제4호서식]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

문서번호				200 . . . . .			
수 신							
제 목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							
<p>귀하께서는 「지역보건법」 제 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 「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납입 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200 년 월 일 까지 시증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				
통지 제 호							
과 태 료 처 분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		
	주 소		전화번호				
위 반 사 항	관련법 조항		위 반 내 용				
	산 출 근 거						
과태료 금액							
<p>※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							
첨부 :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							
200 년 월 일							
성 남 시 장 (인)							

## [별지 제8호서식]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

신 청 인	성 명 (한 자)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과 태 료 처 분 내역	부 과 기 관		납부통지서 번 호	
	고 지 받은 일 자		과 태 료 금 액	
	과 태 료 처 분 사유			
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	(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)			
<p>「지역보건법」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「비송사건절차법」 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	
200 년 월 일				
신청인 : (인)				
성 남 시 장 귀 하				

## [별지 제4호서식]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통지서

문서번호				20 . . . . .			
수 신							
제 목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							
<p>귀하께서는 「지역보건법」 제 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 「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별지 납입 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200 년 월 일 까지 시증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				
통지 제 호							
과 태 료 처 분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		
	주 소		전화번호				
위 반 사 항	관련법 조항		위 반 내 용				
	산 출 근 거						
과태료 금액							
<p>※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							
첨부 :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							
년 월 일							
성 남 시 장 (인)							

## [별지 제8호서식]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

신 청 인	성 명 (한 자)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과 태 료 처 분 내역	부 과 기 관		납부통지서 번 호	
	고 지 받은 일 자		과 태 료 금 액	
	과 태 료 처 분 사유			
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	(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)			
<p>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에 따라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「비송사건절차법」 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	
년 월 일				
신청인 : (인)				
성 남 시 장 귀 하				

## [ 별지 제9호서식 ]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

제 호	지방법원장 귀하		
수 신	지방법원장 귀하		
제 목	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		
<p>1. 「지역보건법」 제26조제3항 관련입니다.</p> <p>2. 「지역보건법」 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 및 「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바, 처분 상대방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
이의 제기자	성 명 (한 자)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
과태료 처분	과태료 처분명		처분근거
	처분 송달일		이의제기일
	처 분 사유	(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)	
이의제기 사유	“		
<p>첨부 1. 이의신청서 1부</p> <p>2. 이의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서류 1부.</p> <p>3. 그 밖의 증거서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   년       월       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 남 시 장 (인)</p>			

## [ 별지 제9호서식 ]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

제 호	지방법원장 귀하		
수 신	지방법원장 귀하		
제 목	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		
<p>1.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 관련입니다.</p> <p>2. 「지역보건법」 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및 「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바, 처분 상대방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
이의 제기자	성 명 (한 자)		주민등록번호
	주 소		
과태료 처분	과태료 처분명		처분근거
	처분 송달일		이의제기일
	처 분 사유	(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)	
이의제기 사유	“		
<p>첨부 1. 이의신청서 1부</p> <p>2. 이의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서류 1부.</p> <p>3. 그 밖의 증거서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    월       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 남 시 장 (인)</p>			

## 【관계법령 발췌서】

### 지역보건법

제5조(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(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3. 28.>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,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·단체·법인·시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·단체·법인·시설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·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4항

및 제5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, 처리 목적·방식,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⑧ 제7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·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**제22조(정보의 파기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 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③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, 보건의료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**제23조(건강검진 등의 신고)** ① 「의료법」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(이하 “건강검진등”이라 한다)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의료기관이 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**제29조(동일 명칭 사용금지)** 이 법에 따른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**제34조(과태료)**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23. 3. 28.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1.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
2.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
## 개인정보 보호법

**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**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,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3. 14.>

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#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
## [별표 2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63조 관련)

### 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위반	2회위반	3회이상 위반
마. 법 제21조제1항·제39조의6(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4호	600	1,200	2,400

## 【성별영향평가결과 (2023A경기성남042)】

벌금,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및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, 제명 및 문구 등 단순변경에 해당하므로, 체크리스트 제출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됨(분석 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).

### 경기도 성남시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(법령)

법령명	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조례				
구 분	제정( )		개정(✓)		
형 식	법률( ) 대통령령( ) 총리령( ) 부령( ) 조례(✓) 규칙( )				
소관 부서	부서장	부서명	분당구보건소	성 명	송기철
				전화번호	031-729-3950
소관 부서	담당자	부서명	분당구보건소	성 명	김서윤
				전화번호	031-729-3997
입법일정 (예정)	관계기관 협의	2023-05-22	~	2023-05-26	(4 일간)
	입법예고	2023-05-30	~	2023-06-09	(10 일간)
	법제담당 등	2023-05-22	~	2023-05-26	(4 일간)

구 분	해당 여부	주요 내용
작성 제외 법령	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령 - 예) 기구, 기록물, 물품, 수당, 보수, 감사, 문서 및 관인, 신분증, 수수료 징수,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요	
	<input type="checkbox"/> 벌금,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- 예) 벌금, 과태료 등의 상하한선 규정,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	「지역보건법」(2023. 3. 28. 시행)일부 개정으로 개인정보 파기, 건강검진 등의 신고, 동일명칭 사용금지 등 과태료 부과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·위임 조항을 정비
	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, 전시 관련 법령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요	
	<input type="checkbox"/>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·개정되는 법령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요	
	<input type="checkbox"/> 국호·국기·연호, 전례, 국경(정부기념)일 의전에 관한 법령 - 예)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,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요	
	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절차, 소송절차, 재판에 관한 법령 - 예)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, 과태료 재판 관련, 제납처분 조항, 효력 발생 기간 및 기한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요	
	<input type="checkbox"/> 법령시행일, 효력에 관한 법령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요	
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,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	「지역보건법」(2023. 3. 28. 시행)일부 개정으로 개인정보 파기, 건강검진 등의 신고, 동일명칭 사용금지 등 과태료 부과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·위임 조항을 정비
	<input type="checkbox"/>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- 예) 여성농어업인육성법,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요	
	<input type="checkbox"/>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(법제처)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요	
<input type="checkbox"/>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- 예) 일몰조항 관련 기준년도의 변경, 삭제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요		

**【부패영향평가결과 (관리번호 2023-37)】**

자치법규명	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		
평가담당	감 사 관	지방행정주사보	조 혜 미
입안주무부서	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	통보(조치)일	2023. 5. 30.
관련조문	검토결과	조치사항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원안동의</li> </ul>		

【규제심사검토결과】

## 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

관 리 번 호	2023-48 경기성남		
조례규칙명	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		
소 관 부 서	기 관 명	경기도 성남시	
	부 서 명	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(의약물관리팀)	
	담당자명	김서윤	전화번호 729-3997
규제심사요청서 제출날짜	2023년 5월 30일		
검 토 내 용	<p>○ 개정조례: 「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 일부개정안</p> <p>○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등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없음.</p>		
종합 검토 의견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안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
	<p>○ 신설·강화되는 내용이 없는바, 원안 동의함.</p> <p>○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: 해당 없음.</p>		

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

2023년 5월 30일

법 무 과 장

(담당자/연락번호 : 유리나/031-729-8843)

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귀하